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전체 양곡에 대한 양곡수급계획 수립 제도를 신설하고, 계획 수립 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함(안 제3조 신설 및 안 제6조).
-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조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미곡 매입 등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II. 검토의견

1. 정부관리양곡 ‘매입·판매’를 ‘취득·판매’로 수정

- 안 제3조제2항제5호는 “정부관리양곡의 매입·판매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양곡수급계획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양곡을 취득·판매하는 일련의 운용사항을 양곡수급계획에 포함시켜 정부관리양곡 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법 제2조제2호는 “정부관리양곡”을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양곡으로 정의하고 있어, 안 제3호제2항제5호와 같이 “정부관리양곡의 매입·판매 등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만 규정할 경우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려는 양곡은 정부관리양곡의 운용 대상에 포섭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부관리양곡 운용 대상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양곡도 포함됨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매입”을 “취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동일한 논지에서 안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9조의4제1항의 “매입”을 “취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위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신 설>	제3조(양곡의 수급 계획 수립) ① (생 략) ② 양곡수급계획	제3조(양곡의 수급 계획 수립)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 각 호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u><신 설></u>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5. 정부관리양곡의 <u>매입</u>·판매 등 운용에 관한 사항 6. (생 략) ③·④ (생 략)	외의 부분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5. 정부관리양곡의 <u>취득</u>·판매 등 운용에 관한 사항 6. (개정안과 같음) ③·④ (개정안과 같음)
	제4조(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생 략) ② 양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2. 정부관리양곡의 <u>매입</u>·판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부양곡수	제4조(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정부관리양곡의 <u>취득</u>·판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부양곡수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신 설>	급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 7. (생 략) ③ · ④ (생 략) 제9조의4(정부관리 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정부관리양곡의 매입·보관·가공·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 ② · ③ (생 략)	급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 7. (개정안과 같음)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제9조의4(정부관리 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취득·보관·가공·공급 등 정부관리양곡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2. 양곡 수급조절 조치를 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 범위 명확화

- 안 제16조제3항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명시적으로 농업협동조합 개념에 포함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양곡의 매입 또는 판매 등 양곡 수급조절을 위한 조치를 하게 할 경우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에도 해당 조치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양곡 수급조절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를 농업협동조합에 더해 지역조합이나 품목조합의 조합장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양곡 수급조절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를 농업협동조합,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기관 또는 단체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의 조합장”을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농업협동조합등”은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 처음 규정되어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4 및 제17조제1항에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농업협동조합’ 용어가 처음 규정되어 있는 안 제16조제3항 전단에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을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위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② (생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제1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u>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② (생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제1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u>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협동조합등(<u>「농업협동조합법」 제2조</u>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② (생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양곡위원회가 심의한 제1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u>제1호에 따른 조합의 조합장을 포함한다</u>)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u>농업협동조합등</u>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 ⑦ (생략)	④ ~ ⑧ (생략)	④ ~ ⑧ (생략)

○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 병 섭)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